

백영화 선임연구위원

### 요 약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음. 보험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었음. 또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도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음.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 및 혁신 촉진,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었음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 관련 법령상의 규제에 대해 특례가 인정됨<sup>1)</sup>
  - 금융위원회는 2023년에 6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음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카드 서비스,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이 있음(〈표 1〉 참조)
  - 이 중 보험에 특유한 사항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었음(11건)
    - 그 밖에 금융회사들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신청한 9건이 특례를 인정받았음
    - 이하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총 11개의 플랫폼 사업자<sup>2)</sup>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7조

2) 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에스케이플래닛,엔에이치엔페이코,카카오페이,쿠론,핀다,핀크,해빗팩토리,헥토데이터임

-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전자금융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이 이에 포함됨)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
-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별도의 신고 없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보험상품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험회사 간 경쟁 촉진 및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취지임
- 한편 위 특례 인정 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과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플랫폼의 업무 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그 이후의 설명, 청약, 보험계약 체결, 사후 관리 등은 업무 가능 범위에서 제외됨
  - 비교·추천 대상 상품 범위를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껌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함
  -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의 계약 주체는 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보험회사이며 해당 보험회사에서 상품 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 방안(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업무 분장, 분쟁해결방안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함
  - 보험회사와의 위탁 계약별로 계약 실적에 비례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동일 금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서비스 출시 전에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코스콤, 금융보안원 등)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고, 알고리즘의 주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며 비교·추천 기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함
  - 비교·추천 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보호 상시평가제<sup>3)</sup>를 적용하도록 함
  -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 한도를 설정함<sup>4)</sup>
  -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함
  - 특정 보험회사 집중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모집실적 및 수수료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함
  - 플랫폼이 보험회사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보험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3)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상 정보보호항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금융보안원에 제출함

4) 단기보험(보험기간 1년 이내)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장기보험은 저축성의 경우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계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의 경우 약 20% 이내로 제한함(각각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의 약 30% 수준)

- 이에 따라 2024년 1월 19일부터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됨<sup>5)</sup>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는 7개 핀테크사와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 전체(10개)가 참여하고, 용종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는 1개 핀테크사와 5개 생명보험회사가 참여함
  -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외에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이 가능한 다른 보험상품들에 대한 서비스도 연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함

####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데이터 분석 툴(MS Power BI)과 업무협업 솔루션(M365)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이 특례를 신청하여 총 1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하나, 내부 업무용 단말기(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임<sup>6)</sup>
  -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효과를 기대하는 취지임
- 한편 위 특례 인정 시 보안 유지 등을 위해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과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허용된 업무 범위(업무 종류, 데이터 범위, SaaS 서비스 종류, Saa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등) 내에서만 SaaS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업무의 추가·변경 시에는 재신청·변경하도록 함
  - 고객의 개인정보·신용정보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임직원들이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정보·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방안 등이 포함된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최초 서비스 개시 전 해당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해야 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해당 보안대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침해사고 대응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서비스 개시 이후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반기당 1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SaaS 관련 보안 활동을 포함하여 해당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출시일로부터 2년) 동안 서비스 이용 상황,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하여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 및 혁신 촉진,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18),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1.19일) 준비상황 점검”

6) 허가된 내부 업무용 PC에서만 SaaS 접속을 허용하고 이외의 시스템은 접근이 차단되며, SaaS 이용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내부망과 동일 수준의 보안 유지를 위해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함

〈표 1〉 2023년 혁신금융지정서비스 신규 지정 목록

번호	신청과제명 <sup>1)</sup> 및 서비스 주요 내용	신청기업명	지정일	관련 규제
1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 사 (공동신청)	'23. 4. 1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4,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17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큰, 패스트포워드, 팀워크,뱅크몰, 부엔까미노	'23. 6. 21	금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제5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18~19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우리카드, 현대카드	'23. 6. 2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20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데이터 전문기관, 참여기관, 이용기관으로 구성됨) 서비스의 운영·관리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공동신청)	'23. 6. 21	신용정보법 제26조의4 제2항,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1호, 동조 제3항 제2호 및 제6호, 제22조의4 제7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5조의2 제2항 제1호 및 [별표 8] II.4.제1호 및 제2호
21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 대출모집인 비교 플랫폼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	파운트파이낸스	'23. 6. 21	금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1호
22~32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큰, 핀다, 핑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23. 7. 19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금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 제5항 제3호
33~35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 대출모집인 비교 플랫폼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23. 7. 19	금소법 제25조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제1호

〈표 1〉 계속

번호	신청과제명 <sup>1)</sup> 및 서비스 주요 내용	신청기업명	지정일	관련 규제
36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23. 7. 19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37	‘안면인식기술과 위치확인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 대면 실명확인 시 안면인식기술 및 추가인증방식(위치인증 또는 PIN번호인증)을 활용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23. 9. 13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38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 - 쿠팡 입점 판매자가 쿠팡 플랫폼을 통해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개설하고 제휴계좌 거래내역 조회 및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쿠팡페이-하나은행 (공동신청)	'23. 9. 13	금소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및 제22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39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골프장에서 그린재킷 앱을 통해 QR 코드를 이용하여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그린재킷	'23. 9. 1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제2호
40~46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KB라이프생명보험(2건),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엠유에프지은행	'23. 9. 1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47~55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약사순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23. 12. 1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56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한국거래소	'23. 12. 13	자본시장법 제4조,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6, 제387조,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412조

주: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의 서비스명을 따름